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시행지침

* 이전 지침대비 변경사항은 파란색 표시

▶ 이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 당 과	담 당 자	전화번호
해양수산부	어촌어항과	과 장 김정화 사무관 김건효 주무관 김상동	044-200-5662 044-200-5663
한국어촌어항공단	귀어귀촌종합센터	전문위원	1899-9597
수협은행	수산해양금융부	담당과장	02-2240-8523
시·도 및 시·군·구		수산 담당부서	

* 귀어 관련 일반적인 사항은 귀어귀촌 종합센터, 대출과 보증지원에 관한 사항은 수협 (수협은행 및 수협회원조합 중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곳)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 보증기금(이하 "농신보"라 한다), 신청서류 작성 및 심사 관련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, 그 외 정책 관련 사항은 해양수산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〈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〉

- o 이 사업은 수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,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.
- o 어장·양식장·어선·시설장비·주택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,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어장·양식장·어선 등 매도자·기타 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민·형사 등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,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·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사업대상자는 「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(최대 15년간)은 **사업장소(관할 시·군·구)에 거주하며** 전업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여야 합니다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(이하 이 지침에서는 "사업시행자"라 한다.)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지역으로 이탈 하거나 사업장(어장·양식장·어선·시설장비·주택 등)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, 연체이자 부과, 제재부가금 부과, 형사 고발, 수산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.
 - * 거치기간 후라도 상환기간 동안은 어업·양식업 외 수산업 경영을 위해 어업·양식업 사업장 및 대출받은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은 불가
-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, 추진의지 등을 심층면접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,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

결정되며, 각 사업시행자별로 심사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**신청 전 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**합니다.

-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, 사업 신청 전에 수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o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**대출 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**. 사전에 충분한 준비·상담 등이 필요합니다.
-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**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** 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부정수급금 및 목적 외 사용 등은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.
 - * 환수 대상 금액 : 지원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납입일의 전날 까지 발생한 이자(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)

I. 사업개요

1. 목 적

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(수산업, 어촌비즈니스업)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

2. 근거법령

-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제21조(귀어업인의 육성)
- o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(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)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서리기묘	2025년	최	근 4기	년 실	적	지표산출	츠 저 HL시
성과지표	목표치	21년	22년	23년	24년	시기	측정방식
① 창업자금 지원자 수	488	422	492	503	381	′25.12	창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실적(건)
② 주택자금 지원자 수	209	178	214	239	163	['] 25. 12	주택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실적(건)

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
합 계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
신규 대출규모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

II.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용어정의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수산업, 어업, 양식업, 어업인, 농어촌 등 용어의 정의는 「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법」, 「귀농어・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・시행규칙을 적용하되, 법률에서 명시되지 않은 다음 용어는 이 지침에 따름

- o (귀어업인)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
 - 1.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(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포함)에서 1년 이상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
 - * 단, 이 지침에서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실행을 위한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전까지 주소지 이전 확인서 등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
 - 2.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
 - * 단, 이 지침에서는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고 있더라도, 익년도까지 본 자금으로 창업할 자는 어업인으로 봄
- (재촌비어업인)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않는 사람
- (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)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·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사람이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는 행위(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)
- o (어촌비즈니스업) 어촌관광사업, 해양수산레저사업
 - (어촌관광사업)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채용(사무장 등)되거나, 운영진에 포함 또는 체험마을구성원에 해당되는 자가 체험휴양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어촌관광(식사, 숙박, 체험, 판매 등) 사업
 - * 어촌체험마을이 없는 경우 어촌관광사업 예정지역의 어촌계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어촌관광(식사, 숙박, 체험, 판매 등) 사업
 - (해양수산레저사업) 「수상레저안전법」시행령 제2조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레저활동,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의 수중레저활동 및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연안체험활동 등을 위한 해양수산레저사업

- 「수상레저안전법」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레저활동
 - 수상(水上)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·오락·체육·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
 - * 모터보트, 세일링요트(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), 수상오토바이, 고무보트, 스쿠터, 호버크래프트, 수상스키, 패러세일, 조정, 카약, 카누, 워터슬레드, 수상자전거, 서프보드, 노보트,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·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
- 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의 수중레저활동
-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·오락·체육·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
-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수상형 체험활동과 수중형 체험활동, 일반형 체험활동 등 연안체험활동 사업
 - 수상(水上)형 체험활동 : 「선박법」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나「수상레저 안전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 지는 체험활동
 - 수중(水中)형 체험활동 :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. 다만,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봄
 - 일반형 체험활동 : 수상형·수중형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

2. 사업대상자

- 이 아래 사업대상자로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·군수가 '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'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자
- 사업대상자는 '귀어업인(희망자 포함) 및 재촌비어업인'으로서,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(1959. 1. 1. 이후 출생자)인 사람*
 - * 나이가 만 66세 이상이라도 귀어 창업을 위해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"귀어 창업교육" 등의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, 교육실적유효기간(5년)까지 사업대상에 포함
 - *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한 사업대상자 중 이미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하는 경우도 포함
 - 사업대상자 및 사업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사람
 - *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(고용)하는 어업인이 귀어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
- 사업대상자는 사업(대출) 완료 후 1년 이내에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27조(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) 및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(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)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하여야 함
 - *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

3.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, 선정 제외대상

① 사업 신청자격

- ㅇ 귀어업인은 이주기한, 거주기간,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
- ㅇ 재촌비어업인은 거주기간, 교육이수 실적,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
 - * 귀어업인 및 재촌비어업인 모두 부부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함

○ 이주기한

- (**농어촌지역 거주**)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・양식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어업・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가공(유통)업・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
- (**농어촌 이외의 지역 거주**)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·양식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업· 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가공(유통)업·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
 - * 대출 실행을 위한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시 당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
 - * 주택구입 지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준공계 등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전 여부를 판단 가능하며, 사업 대상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

< 전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>

- o (개인사업 운영) 귀어지역에서 어업 또는 양식업 등을 운영하면서 수산물의 가공업 및 유통업, 어촌비즈니스업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
 - * 농업은 겸업 가능
- o (일반회사 재직) 귀어지역에서 공공근로(해양쓰레기 수거사업, 산불감시원 등), 아르바이트 등을 연간 6개월(월 단위)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재직하는 경우
 - * 단, 연간 3개월(월 단위)을 초과하여 재직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(시장·군수·구청장)에게 사전 또는 사후(재직 후 1개월 내)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함

ㅇ 거주기간

-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. 단,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사람
- 다만, 귀어업인의 경우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

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,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(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)하지 않았으면 사업 신청이 가능함

- *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
- * 직업군인(군무원 제외, 제대 만 5년까지 인정), 북한이탈주민은 근무지(거주지)가 농어촌지역인 경우,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
- * "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기업 재직자 및 퇴직자"는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고,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

< "특별고용지원업종"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제한 제외 조건 >

- ㅇ 대상업체 :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사업장
- ㅇ 퇴직기간 : 2020.1.1 이후 퇴직하였거나, 퇴직하고자 하는 자
- ㅇ 대상사업 : 창업자금(주택구입 자금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)
- o 창업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: 2025년

ㅇ 비어업기간

-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*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함(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어선 청년 임대사업 및 양식장 임대사업 등 귀어정책 지원사업으로 인해 일시 적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 - * 예시) 2025. 1. 1. 신청자의 경우 2020. 1. 1.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

ㅇ 교육이수 실적

-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 하는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(필수)
 - * (교육 인정 범위) 해양수산부(산하기관 포함)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'귀어 창업교육' 등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교육
 - *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 까지 사후교육 필수 이수
- 다만, 다음의 경우 귀어관련교육(35시간)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나(귀어귀촌 예정자 제외), 이 경우 심사기준 평가항목 중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
- ① 사업신청 전에 실제 어업·양식업 경영 또는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(양식장·어선 등을 통해 수산물을 생산·판매한 실적 증빙자료, 양식 기자재·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, 어업·양식업 경영 및 어업·양식업에 종사한 확인서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)
- ②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수산계학교 졸업자

- * 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하며, 졸업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
- ③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

②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

- 병역미필자, 고등학교·대학(방송통신학교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학교*와 야간과정은 제외) 등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
 - *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,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5호의 방송 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
 - 사업신청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나,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졸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
- ㅇ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
- ㅇ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사람
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「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 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
- ㅇ 금융기관의 대출(보증)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사람
-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, 교사, 공기업,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, 농(축)· 수·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(상근근로자)*와 개인사업 운영자**
 - *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사람
 - ** 전업(어업 및 양식업)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업 또는 농수산물과 관계된 가공업 및 유통업, 어촌비지니스업 등 수산업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선정 가능
 - 공무원(직업군인 포함), 교사, 공기업,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, 농(축)·수· 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(상근근로자)와 개인사업 운영자의 경우는 지원신청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,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기 전까지 폐업* 또는 퇴직**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음
 - * 귀어지역에서 어업 또는 양식업 등을 운영하면서 수산물의 가공업 및 유통업, 어촌비즈니스업 등 수산업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폐업하지 않아도 됨
 - ** 생계유지 등을 위해 귀어 지역에서 공공근로, 아르바이트 등 취업 필요시 사업

시행자(시장·군수·구청장)에게 별지 제16의 서식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 가능[승인 시점부터 연간 6개월(월 단위) 까지]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로,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 배제 되거나 제한받고 있는 자
- 어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,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사람
- o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 또는 양식업의 면허·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(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) 후 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,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
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
- ◆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·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 등을 지원 받은 사람
- 어업, 양식업 등을 하지 않으면서 대출받아 구입한 어선으로 「낚시관리 및
 육성법」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
- 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대출기한 종료시점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다만,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선정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향후 1년간 사업 대상후보자 선정 시 평가점수에 감점

4. 지원분야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① 지원분야

- o (창업자금) 수산분야(어업, 양식업, 소금생산업, 수산물 가공·유통업 등) 및 어촌비즈니스분야(어촌관광, 해양수산레저)
 - * 수산물 가공·유통업과 어촌비즈니스업은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
- (**주택구입 자금**) 주택의 매입, 신축, 리모델링(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·개축하는 경우 포함)
 - *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제외, 다만 귀어창업을 위해 다른 농어촌 지역(타 시·도)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재촌비어업인도 주택구입 자금 신청 가능

< 지원제외 분야 >

- ㅇ 어획물운반업
- ㅇ 낚시샵, 낚시터업, 펜션, 민박, 레스토랑, 횟집, 단순판매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ㅇ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 구입
- o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등 주택과 관련된 지원(보조·대출)을 받은 경우, 주택구입 지원 불가

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ㅇ 창업자금(수산분야, 어촌비즈니스분야)

< 수산분야 >

HOL	поог
분야	사용용도
어업	○ 어선 건조 및 구입, 어선개량 및 보수, 어구 및 장비 구입 * 어선 대체 건조를 목적으로 구입하여 페선 처리하는 경우는 척수에 미포함 * 어구 구입 : 최대 1억 이내 * 어업허가는 어선거래시스템(www.어선거래.kr)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이상에 확인하여 산술, 평균한 가격을 어선매매 금액 이내에서 선체와 허가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인서 발급 * 사업시행자 관할구역 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, 인접한 지역(타시·도)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기록을 관리 * 기타 어업(면허, 허가, 신고)을 위해 필요한 어장·시설 등의 구입·설치비 등
양식업	o 양식장 매입, 신·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* 양식장 부지 구입(기존 양식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부지구입 불가) ① 부지와 시설 포함 매입 : 최대 3억 이내 ② 부지구입 : 최대 1.5억 이내 ○ 종자입식비 ○ 양식기자재, 어장관리선(엔진 별도 구매 가능) 구입
수산물 가공 및 유통	○ 수산물 가공, 보관 및 유통판매 등을 위한 시설 매입, 신(증)축 및 시설 개보수비 * 부지 구입 : 최대 1.5억 이내 * 기존 가공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부지구입 불가
기타	 폐수처리 및 저장시설의 설치, 기타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* 수산장비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어업(양식업)에 필요한 장비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○ 염전 및 염전부대시설 등 신(증)축, 시설개보수 및 구입비

< 어촌비즈니스분야(어촌관광, 해양수산레저) >

- 어촌관광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신축·리모델링·관련 장비 구입 비용 등
 - * 부지구입 : 최대 1.5억 이내
- 「수산업법」제2조제17호에 따른 '유어'를 위한 창업자금
-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

ㅇ 주택구입 자금(매입, 신축, 리모델링 등)

- 대상지역 : 읍·면·동(농어촌지역에 한함)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
- 대상주택 : 주택의 연면적 150m² 이하
 - * 주택에 포함된 토지(지목 : 대지)는 자금으로 구입 가능
 - *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가능하나, 연면적 150m²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*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m²이하의 경우에 한함
 - * 「건축법 시행령」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단독주택(단독주택, 다가구주택) 및 공 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 등 모두 포함(단,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 거공간을 확보하고,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
 - *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지원 제외

5. 지원방식 및 형태

ㅇ 지원방식

- 신속한 창업 유도를 위해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(대출)
 - * 사업기한 내 대출신청을 하였으나,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대출금 수령 가능
- 사업대상자는 2026. 12. 31.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
 - *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기한 내 대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(천재 지변 등 연장사유가 사업대상자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함) 해양 수산부에 사업기간을 12월 이내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양수산부는 안정적인 귀어 지원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

○ 지원형태

-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(일부완료 또는 완료)후 담보(신용, 물건)를 제공하고, 수협에서 대출을 받으면,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(기준금리-대출금리 1.5%)를 지원
- (재원) 수협자금 100% (이차보전사업)
- (대출금리 및 대출기간) 연 1.5%,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
- 이 (사업량)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

6. 지원(대출)한도 기준 및 범위

- 지원(대출)한도 기준
 - 창업자금 : 사업대상자 당 300백만원 이내
 - 주택구입 지원 자금 : 세대당 75백만원 이내
 - * 동일 세대에서 2명 이상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, 주택구입 지원은 1인만 지원 가능
 - * 지원 대상자는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각각 별도로 신청 가능
 - 정부·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(귀어·귀농·귀산촌 창업 자금 포함)을 대출받은 경우, 지원받은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

< 창업자금 지원신청 가능액 계산 >

- ㅇ 지원신청 가능액 = 3억원(대출한도액) 기 시설성 정책자금대출
 - * 시설성 대출금 : 어선, 양식장, 주택 및 어구, 기계, 기구 등 수산장비 구입 등에 지원된 대출기간 5년 이상의 정책자금 대출금 잔액
 - * 귀농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금을 받은 경우 귀어 창업 자금 지원신청 불가
 - * 기존에 귀어 창업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에도,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기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대출한도 내에서 재지원(4회까지) 가능
- 실제 대출금액은 수협이 대출신청자의 어장, 양식장, 건축물 평가 등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

○ 신용보증 지원

- 귀어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
- 어촌비즈니스 분야의 경우 농신보 보증지원에서 제외

<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(농신보) 보증지원 >

- o 지원대상자는 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」 제2조,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 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,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
-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%까지 보증지원하고,
 잔여 10%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분담분(부분보증제도 운영)
 - * 지원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농신보 대출금의 보증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
 - * 일부 시설자금의 경우 감정가액 이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진행시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
 - * 55세 이하 청·장년층의 경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의 농신보 보증비율은 95%

ㅇ 대출방식

-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(증빙서류

포함)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

- 단, 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 계획서, 실적 확인서(증빙서류 포함)를 발급받아 분할 대출 신청도 가능

ㅇ 유의사항

-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어장, 양식장, 어선, 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
 - * 다만,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
-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,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
- 매매 등으로 양식장, 어선 등을 구입할 경우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(본인 및 가족소유 수산업 기반시설 등을 명의변경 후 재매매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함)
 - * 지원불가 예시 : 본인 및 가족소유 → 타인소유(2년 미만) → 본인소유
 - * 주택구입에 한하여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
- 양식시설, 어선 등 기존의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물(수산장비 포함) 등 구입비 지원 가능
 - * 임차료, 행사계약 비용 및 다른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
- 이미 본인 명의로 부동산,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(他) 대출금을 상환 하는 용도로 동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며,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기 이전 지출한 자금도 지원이 불가함
- 부지를 임차하고 시설만 본인 명의일 경우, 농신보, 수협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
- 당해연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차년도에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선정 연도 지침을 따름
- 사업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, 구입 및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, 지분이나 공동 소유는 금지
-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 전 대출 및 농신보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사업 진행
-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. 단,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1. 사업계획수립 단계

해양수산부

o 사업연도 "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시행지침" 수립·통지

2. 사업신청단계

사업시행자

- 사업시행자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"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" 사업에 대해 안내(게시판, 홈페이지 등 : 사업지침 통보 후 1개월 이상)
 - * 교육 등 지원조건 충족 기준일은 [별표2] 또는 [별표3]의 기준에 따라 각 사업 시행자가 심사하는 전날까지로 함
 - 사업시행자의 자금지원계획, 신청자격, 지원조건, 지원내용, 제출기관, 신청 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자료 제공
- o 접수 및 선정 : 사업 신청접수 및 선정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2월 말, 8월 말 제출
 - * 접수 기간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 자체 추진하며, 필요시 해양수산부에서 추가 모집할 수 있음

사업신청자

- 0 사전확인
 -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전에 수협은행과 대출상담(신용보증 포함)하여 대출 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발급 받아 제출
- ㅇ 접수처 : 귀어 지역 주소지 관할 사업시행자 수산 관련 부서
- ㅇ 제출서류
 -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, 동의서 포함)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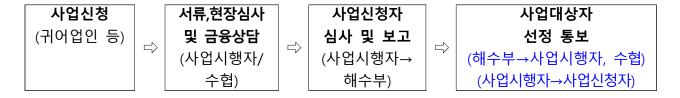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, 신용조사서 1부(별지 제3호 서식, 수협 발급), 가족관계증명서,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

- *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
- * 신청서 접수 시 심사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(해당자)

< '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'를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>

- o 주민등록표 등·초본
- o 사업자등록증명,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,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
3. 사업자 선정단계



사업시행자

ㅇ 현장확인

- 사업시행자는 사업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어업 등을 경영 하거나, 하려고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
- 사업시행자는 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(별지 제4호 서식)을 통해 확인

ㅇ 선정심사

- 각 시·군·구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'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'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
- *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대출을 방지하고, 어촌 거주기간이 길며, 수산업 관련 실습 경력이 많아 중도 포기하지 않고 귀어를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한 자를 선발
- 선정심사위원회는 귀어관련 전문가, 대출기관(수협) 임직원·귀어귀촌단체 관계자, 어촌계장 등 외부평가위원만으로 구성(최소 3인 이상, 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장으로 참여하되 평가점수는 미부여)하고 선정심사는 상·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
- * 심사 일정(안) : (상반기) 당해연도 2.20(휴일인 경우 다음날) → 심사결과 공개(2.28), (하반기) 당해연도 8.20(휴일인 경우 다음날) → 심사결과 공개(8.30)
- 다만, 각 시·군·구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, 귀어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언론보도, 공고 등 충분한 홍보를 실시

- 선정심사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·사업계획서에 대해 심층 면접 평가를 실시하고 [별표 2]의 심사기준(시·군별 자체조정 활용가능)에 따라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·지원
- * 동점인 경우 주민등록상 나이가 어린사람을 우선 추천
- ** 심사 전 사기 등 피해사례 및 부정수급 관련 내용을 심사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공지
 - 선정심사위원회 외부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
-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신용조사서(미제출 시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활용하여 수협에 일괄조회 요청)를 확인하여 농신보 보증 가능여부 및 대출 가능 금액을 사전에 조사하여 신용 결격 사유 및 대출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 선정 후 미지원자 발생 최소화
- 아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결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보완되어야할 경우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
- 사업시행자는 사업신청자 중 귀어업인은 별표 2, 재촌바이업인은 별표 3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사업 대상후보자로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추천
 - 사업 대상후보자 선정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되, 동점인 경우 주민등록상 나이가 어린사람을 우선추천 하여야 함

수협

- 수협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산금융정책자금 대출여부 확인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속히 통보
- 수협은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전 대출상담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용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하여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자에게 발급

해양수산부

- 사업대상자 선정 및 대출한도액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 및 수협은행 등에 통보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
 - 통보기관 : 시·도(시·군·구), 수협은행(수산해양금융부)

4. 자금배정단계

해양수산부

· 시도별 지원액 확정, 시·도(시·군·구) 및 수협은행에 통보

사업시행자

- ◦사업대상자에게 사업대상 선정결과 및 대출 가능 금액 통보
- 사업추진 실적(계획)확인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(계획) 확인 후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 실적(계획)확인서(별지 제6호서식) 발급
-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사업추진 실적(계획)확인서 확인 후 대출실행
 - *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 계획확인서에 의해 대출하고,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 실적확인서를 별도 징구
 - 사업대상자별 대출실적을 사업시행자에게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

사업대상자

수협

· 사업추진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추진 실적(계획)확인서(별지 제6호 서식)를 발급받아 수협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

해양수산부

o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"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" 대상자 및 지원액이 확정되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·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

사업시행자

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

수협

- 수협은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요청
- 수협은 사업대상자가 대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안내서를 작성하여야 함

5. 사업 시행단계

시·도

o 시·도지사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토대로 자체 세부계획*을

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

* 사업 추진방향, 사업추진 절차, 담당자 교육 및 귀어업인 홍보계획 등

사업시행자

-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후 사업추진 실적(계획)확인서(별지 제6호 서식)를 신청하는 경우, 사업실적 등을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
 - * 사업대상자가 어선을 구입한 경우, 어업허가 거래금액 조사서(별지 제10호 서식)를 작성, 관리

< 사업추진 실적(계획)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>

- 사업시행자는 일반회사 등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추진 실적(계획)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여부를 확인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함
- 다만, 급여수준이 낮고, 요양원·학교 급식실·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와 공공근로(해양쓰레기 수거사업, 산불감시원 등), 아르 바이트 등을 연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재직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판단하여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가능(사업추진 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)
-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계획(장소)의 변경(별지 제5호 서식) 신청서, 사업자 선정 취소신고서(별지 제7호 서식) 또는 지원사업장 처분 신고서(별지 제8호 서식) 등이 접수된 경우, 승인 여부를 신청인 및 수협에 통보하여야 함

수협

- 수협은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로부터 문의가 있는 경우 대출조건, 신용 평가 및 담보설정, 대출서류,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하고, 대출은 사업대상자와 수협은행이 협의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
 - * 사업대상자의 신용 또는 사업계획 등의 검토없이 대출을 거부하지 않도록 유의
- 수협은 사업대상자가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,
 사업대상자 신용 등 결격사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
- 수협은 사업시행자가 발급한 사업추진 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추진 계획확인서를 제출받아 대출 지원

사업대상자

-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대출을 받기 전 또는 받은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 하거나 사업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(별지 제5호 서식)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
-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추진 실적(계획)
 확인서(별지 제6호서식)를 발급받아 수협에 대출 신청
 - 주택건축, 수산시설 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(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)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고 사업추진 실적(계획)확인서(별지 제6호 서식)를 발급받아 대출
 - 사업추진 실적(계획)확인서(별지 제6호 서식)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소유권이전 완료 후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추진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수협에 제출하여야 함
 - * 사업추진 실적(계획)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,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 실적(계획)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수협에 제출
-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선정 취소 신고서(별지 제7호서식)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
 - *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관할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자 선정 취소 신고서를 제출· 승인받지 않고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대출기한 종료시점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신규로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사업대상자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,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(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)

<주택구입 지원 사업 추진 유의사항>

- o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
 -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토지대장, 건축물대장, 등기부등본 등을 수협에 제출하여 대출 신청하되,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수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
- o 사업시행자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,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(사용승인서)를 발급
- o 사업시행자는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사업대상자가 품격 높은 농어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
 -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 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

6. 이행점검단계

① 사후관리

해양수산부

o 대출금 지원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·보완

사업시행자

-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 중 기술·경영지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상황 확인 및 기술·경영 지도 실시
- 사업시행자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대출금 지원연도부터 대출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
 - 사업시행자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자 관리카드(별지 제11호서식)를 작성 비치하고, 분기 1회 이상 현장방문 등 실태조사(별지 제12호 서식) 실시
 - 사업신청 전에 귀어 관련 교육(35시간)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대상자는 사업 추진 실적(계획)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(다만, 사업 신청자격 중 필수교육 면제자는 제외)
 - * 필수교육 미이수 시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 선정 취소 및 대출금 회수 조치
- 사업시행자는 대출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·유용,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
 - 사업시행자 등은 대출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협에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
- 사업시행자는 2025년 이전 창업자금 사업수혜자 중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전업 규정 등을 설명하고,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등동의를 받아 수산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근로자로 근무하는 등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실시

② 선정 취소 등

사업시행자

-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대출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(별지 제13호서식)
 - 대출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
 - 어업·양식업 등의 면허·허가·신고 등의 취소 또는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수산업 또는 어촌비지니스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
 - 주소지만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(위장 전입자)
 -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공공 근로, 아르바이트 등에 6개월(월 단위)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우
 -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
 - * 사업시행자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(최대 2개월 이내)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, 그럼에도 어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사업 취소
 - 어업, 양식업 등을 하지 않으면서 대출받아 구입한 어선으로 전업적 낚시 어선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구입, 신축 또는 증·개축한 양식장·어선·시설장비·주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 승인없이 타인에게 매각, 폐기 또는 임대 등 처분한 경우
 - * 창업자금으로 대출받아 마련한 어선.양식장 등 수산기반시설을 수협과 사전협의하여 매각, 폐기하고 다른 수산기반시설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 유지 가능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
 -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대출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·회수함
- 사업시행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수협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하고, 다음의 벌칙사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
 -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,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유인 경우, 사업시행자가(시장·군수·구청장)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취소 (동일 사유로 두 번째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사업취소)
 - * 경미한 위반사유의 여부는 사업시행자(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자체 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판단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

-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
③ 사업장소의 이전 등

사업대상자

- 사업대상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수산분야 등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(별지 제5호서식)
 - 사업장 변경신청 접수(이전 전 사업시행자) → 변경사항 검토 등 협조(이전 예정 사업시행자) → 변경신청 결과 통보(이전 전 사업시행자) → [변경신청 승인 시 : 사업대상자 이관 및 사후관리(이전 예정 사업시행자)]
- 귀어업인·재촌비어업인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원 사업비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소(시·군·구)를 이전하려는 경우,
 - 이전 전 사업시행자는 이전 예정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장소 변경 적정성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, 이전 예정 사업시행자는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이전 적정성(60점 이상 등)을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이전 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
 - 이전 예정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자 이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, 이전 전 사업시행자는 관련자료(필요시 사업장소 이전 신청자에게 자료요구) 제출
- 사업대상자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마련한 사업장(양식장, 어선, 시설장비, 주택 등)을 처분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 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함

④ 사업의 승계

사업승계 신청자

- 사업대상자가 사업자금 대출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변 이상이 발생하여 지원받은 수산업 기반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, 사업대상자 자격을 배우자, 직계존비속(배우자 포함) 또는 형제·자매가 승계 가능(별지 제9호 서식)
 -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경영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승계 신청서(별지 제9호서식)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

사업시행자

- 사업시행자는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고,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수협 등에 통보해야 함
 -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, 사업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출금 회수
 - 승계자에게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교육 실시
 - 대출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대출금 및 대출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(수협의 여신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)

⑤ 보고

시·도(사업시행자)

- 시·도지사(사업시행자)는 지원현황(별지 제14호 서식)과 실태조사 결과(별지 제12호 서식)를 반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
 - * 별지 제15호서식은 엑셀로 제출, 별지 제13호 서식은 한글과 엑셀로 제출

수협은행

- 이 시·도지사(사업시행자)로부터 지원대상자 선정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1개월 이내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 제외 조치
- 다출 취급기관은 대출실적(별지 제15호 서식)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해양 수산부에 제출
 - 단, 총 대출규모 대비 대출실행 금액이 50%를 초과할 경우 매 익월 10일 까지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

⑥ 사업평가 및 환류

ㅇ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
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절차

단계별 추진절차	시기(안)	추진기관 및 내용
지침통보 및 홍보	(사업 전년도)	○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시행지침 시달(해양수산부) ○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·홍보(시·도, 시·군·구 및 수협은행)
사업신청 및 금융상담 (귀어업인 등)	(사업 모집시)	○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규모 등 금융상담(수협)○ 귀어 창업자금 신청(귀어지역의 사업시행자)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신청자)
선정심사 (사업시행자)	('25. 2월, 8월)	o 선정심사 :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
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	('25. 2월, 8월)	○ 시·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보고 (시·군·구, 시·도 → 해양수산부(어촌어항과)
사업량 배정 및 조정	('25.3월, 9월)	○ 시·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(해양수산부) - 시·도별 사업규모 파악을 통해 적정 배정
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	('25. 3월, 9월)	 아업대상자 및 사업규모 확정 보고·통보 (해양수산부 → 시·도 → 사업시행자 → 사업대상자)
사업추진 (사업대상자)	('25. 3월 ~ '26.12월)	 아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아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요청(사업대상자 → 사업시행자) 증빙서류 첨부
사업실적확인 (행정기관)	('25. 3월 ~ '26.12월)	 ○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(사업시행자 → 사업대상자) ○ 자금대출 신청(사업대상자→수협)
자금대출 (수협)	('25.3월 ~ '26.12월)	 ○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(수협 → 사업대상자)
사후관리 (행정기관)	(대출시점~상환)	o 대출을 받은 연도부터 상환일까지 사후관리

- * 추진 절차에 따른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
- ** 사업시행자는 사업 신청접수 및 선정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2월 말, 8월 말까지 제출 (접수 기간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 자체 추진하며, 필요시 해양수산부에서 추가 모집할 수 있음)
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사기준(귀어업인용)

对 :	 가 항 목		등	급		· 등 급 기 준	
-0 /	1 8 7	A	В	С	D	0 Н / Г С	평점
1. 귀어	어촌이주	10	8	6	4	A : 이주가족이 4인 이상인 경우	
인원수	가족 수					B : 이주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	
(10점)	(본인 포함)					C : 이주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	
						D : 본인만 이주한 경우(1인 세대주인 경우 포함)	
						* 주민등록등본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	
2. 어업 경영·		20	16	12	8	A : 6개월 이상인 경우 B : 4개월 이상인 경우	
좡및굛	(유형1)					C: 2개월 이상인 경우 D: 1개월 이상인 경우	
이수실적	어업(양식업)					* 일용근로자, 단시간근로자 등의 경우 1일 7시간 미만은	
(20점)	및					합산하여 7시간을 1일로 환산	
(유형1·2 중선택)	어촌비즈니스					* 어업경영, 양식어가 등에서의 근로실적(양식어가 주	
	등 창업분야					소지 관할 시장·군수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), 해양수산	
	경영·종사 실적					레저업체 및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근무(운영) 실적이 사업계획의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경우만 인정	
						* 수산계학교 졸업자는 "A등급" 부여	
		20	16	12	8	A : 210시간 이상인 경우 B : 140시간 이상인 경우	
		20	10	12	O	C: 70시간 이상인 경우 D: 35시간 이상인 경우	
						* 해양수산부(산하기관 포함)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	
						'귀어 창업교육'등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교육	
						* 귀어학교를 수료(3~4주 이상)하고, 동일한 창업분야로	
						신청하는 경우에는 "A등급※ 부여	
	(유형2)					*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및	
	이론+체험+					ONE-STOP 양식창업지원 교육을 수료(3~4주 이상)하고,	
	기술교육 실적					하고, 동일한 창업분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"A등급*	
						부여	
3. 농어촌거주	이주 후	10	8	6	4	A :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	
(10점)	실 거주기간				_	B :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	
(201)						C: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	
						D :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	
						*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	
4. 정착의욕	어업경영(양식	20	16	12	8	A : 어업경영·농어촌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	
(20점)	업) 및 농어촌					B : 어업경영·농어촌정착 의욕이 높은 자	
(20 8)	정착 의욕					C: 어업경영·농어촌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	
	07 77					D : 어업경영·농어촌정착 의욕이 낮은 자	
						D . 이 11성 3 · 장이관·정식 기록이 웃는 사 * 사업계획서,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	
						* 사업계획시, 증당시 증의 사료를 모내도 사업일행성과 농어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	
						01107 /100 012 0/1	

জ-! - ভা	· 원 · ㅁ		등	급		ㄷ ㄱ ᅱ ㅈ	더기		
병 /	- 항 목	A	В	С	D	등 급 기 준	평점		
	생산 지역·기술의 적합성 (어촌비즈니스 : 사업지역 및 사업기술의 적합성)	10	8	6	4	A: 매우 우수, B: 우수, C: 보통, D: 미흡 *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			
	생산·판매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(어촌비즈니스 : 운영계획)	10	8	6	4	A : 매우 우수, B : 우수, C : 보통, D : 미흡 *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			
	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	10	8	6	4	A : 매우 우수, B : 우수, C : 보통, D : 미흡 *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			
	타어가 생산품종과의 공동출하관리 가능성 및 적합성 (어촌비즈니스 : 주변사업과 연계가능성)	10	8	6	4	A : 매우 우수, B : 우수, C : 보통, D : 미흡 *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			
감점 사항	 사업계획과 관련수산물인증을 및 무역, 어촌 받은 경우 / 이창업연수과정 경영이양직불. 정착 교육(3~4 아래 항목에 	런 분 [©] 받은 비즈 여성인 이 다 제 다 4주 [©] 해당	야의 경우 니스 경우 나상지 이상) 하는	국가 / 전 / 수 / 민 - 기 - 경	기술 성보통 건분야 산업 ⁶ 산업서 어선 수자 우 2	, 2개 이상은 4점,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. 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/ 친환경 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/ 수산물 관련 유통 야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/ 귀어 창업 컨설팅을 인턴제 /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/ 대학생 이 미만인 경우 /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선정자 / 청년임대사업 / 양식장 임대사업 선정자 / 귀어학교 점의 감점을 부여한다.			
< 평가자의 =									
지원가능	지원불기	<u>}</u>	+	지원					
			-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*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모두 60점 이상이 되어야 지원가능 ○ 지원불가능 - 총점 60점 미만인자 -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,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(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)						
심사자	소속			부	서	직급 성명 서명	}		
확인자	소속			부	서	직급 성명 서명	}		
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사기준(재촌비어업인용)

-1) -) H		등	급			
평 7	가 항 목	Α	В	С	D	능 급 기 준	평점
평 7 1. 가족 인원수 (10점) 2. 어업 종사 및 교육 이수실적 (20점) (유형1·2 중선택)	(유형1) 어업(양식업) 및	A 10 20 20			B 8	등 급 기 준 A: 동반가족이 4인 이상인 경우 B: 동반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 C: 동반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 D: 1인 세대주인 경우 * 주민등록등본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A: 6개월 이상인 경우 B: 4개월 이상인 경우 C: 2개월 이상인 경우 D: 1개월 이상인 경우 C: 2개월 이상인 경우 D: 1개월 이상인 경우 * 일용근로자, 단시간근로자 등의 경우 1일 7시간 미만은 합산하여 7시간을 1일로 환산 * 어업, 양식어가 등에서의 근로실적(양식어가 주소지 관할 시장·군수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), 해양수산레저 업체 및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근무(운영) 실적이 사업계획의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경우만 인정 * 수산계학교 졸업자는 "A등급" 부여 A: 210시간 이상인 경우 B: 140시간 이상인 경우 C: 70시간 이상인 경우 D: 35시간 이상인 경우 * 해양수산부(산하기관 포함)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'귀어 창업교육' 등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교육 * 귀어학교를 수료(3~4주 이상)하고, 동일한 창업분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"A등급※ 부여 *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및 ONE-STOP 양식창업지원 교육을 수료(3~4주 이상)하고, 동일한 창업분야로, 동일한 창업분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"A등급** 부여	평점
3. 정착의욕 (20점)	어업(양식업) 경영· 농어촌정착 의욕	20	16	12	8	A: 어업경영·농어촌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B: 어업경영·농어촌정착 의욕이 높은 자C: 어업경영·농어촌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D: 어업경영·농어촌정착 의욕이 낮은 자* 사업계획서,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어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	

对 7	가 항 목		등 급 두 근 기 주		등 급 기 준	평점		
3 /	7 8 5	A	В	С	D	이 비 기 판	70 TH	
5. 사업계획의 적정성 (50점)	생산 지역·기술의 적합성 (어촌비즈니스 : 사업지역 및 사업기술의	20	16	12	8	A : 매우 우수, B : 우수, C : 보통, D : 미흡 *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		
	적합성) 생산·판매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(어촌비즈니스 : 운영계획)	10	8	6	4	A : 매우 우수, B : 우수, C : 보통, D : 미흡 *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		
	문장계획)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	10	8	6	4	A: 매우 우수, B: 우수, C: 보통, D: 미흡 *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		
	타어가 생산품종과의 공동출하관리 가능성 및 적합성 (어촌비즈니스 : 주변사업과 연계가능성)	10	8	6	4	A : 매우 우수, B : 우수, C : 보통, D : 미흡 *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		
6. 가점 및 감점 사항	- 사업계획과 관수산물인증을 및 무역, 어른 받은 경우 / 여 창업연수과정 경영이양직불 정착 교육(3~ 이 아래 항목에	련 분 [©] 받은 비즈 비성인 비 이수 제 대 4주 [©] 해당	야의 경우 니스 경우, 구자 상지 하는	국가 / 전 / 연 / 인 - 경	기술 성보통 건분야 산업 ⁶ 상업서 어선 수자 우 2	2개 이상은 4점,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. 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/ 친환경 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/ 수산물 관련 유통 야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/ 귀어 창업 컨설팅을 인턴제 /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/ 대학생 미만인 경우 /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선정자 / 청년임대사업 / 양식장 임대사업 선정자 / 귀어학교 점의 감점을 부여한다. 생자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던 자		
< 평가자의		,,,,						
지원가능	가능 지원불가							
심사자	소속			부	서	직급 성명 서명	}	
확인자	소속			부	서	직급 성명 서명	}	
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

		구	- 분	귀어업인()	, 재촌비어업역	인()	주민등	록번호	-	
		성	명		(한자)	TE	EL		
	スコ		이주 전				Н	P		
신	주소		이주 후 업예정지				e-m	nail		
청		^r	됩예정시			귀어전				
자		학	력			직업	(근무처	:)
	어	섭. 잉	부식업 및	00업 00년	경영(종사)	교육			00시간	
	* 재촌	비어업	니스 경력 인은 종사실적		경영(종사)	실적	* ፲፲		경영, 종사실 동빙자료 별도	
		. –	리에 관한	 □있음 □없	습					
밥			<u>:</u> 여부			did m	4	ļ .	키어 버지까지 그	- (7 T)
		족상		□부 □모 ○명	□배우자 □기	다년: '전	5'	1.	창업분야(업종	-/ 舌干)
.	이주		•	-	01 v1 -1-1/	ㅁ᠈)시키	Ε,	2.		
			거계획		, 월세, 기타(3.		
	,		업)경영 및	- 업종 :		, 세부업	종 :			
			스 규모 인 미기입	- 경공규모 : - 주요시설	: ㅇㅇ식(ha,	m				
* ^1	논미대			창업자금	* (예시) 어선	서(O톤) Ož	현 양식	 장 N거(ha. m² 등)	
			업별 - (구)	주택구입	* 필요시 등					
וא הו		₩.E	무(량)	어촌비즈니스	* (예시) 스	킨스쿠버				
사업				사업별	합계			출금	1.1.1.5	· 자기자본
신청		አ ት ር	업비	합계		소계	장	업자금	기타대출	, , , _
내용			_日 -) [원)	<u>업 세</u> 창업자금						
		(신	!전)	주택구입						
				어촌비즈니스						
민원인]제출	서류		(개인정보 수천 급) 4. 가족관						신용조사서
	·공무 인사형			록표 등·초본 7 험피보험자격이					고용정보확인	서
				행정	정보 공동이]용 동의	니서			
1. 본	인은	0]	건의 업무	처리와 관련하	여 담당공무원	년이 「전	 자정부	법」제	36조에 따른	행정정보의
				의 '담당공무원						
				확인하는 6에			이용을	는 귀어	창업 및 주택	택구입지원사
			- , , - ,	이 제공하는 것		•				
※ [민원인	이 형	행정정보 공	·동이용에 동의 ㄷ			E 직접 기	관련 서	류를 제출하	여야 함.
] 미동의 고 두 5	_ 들이 서 (増えい		
위	<u></u> 와 긴	-0]		및 주택구입			,	•		
''	, E	. 1	년			L U TE	11 E	н 11.		
				신청인	•		(서명	또는	인)	
00	시경	ડુ - ર	군수・구	청장 귀하			,		•	

<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>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□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, 지원, 사후관리, 사회의 대상자 선정, 지원, 사회의 대상자 선정, 사회의 대상자 선정,
- □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성별, 연락처, 주소,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, 어업경영 기반 사항. 어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
- □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 :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
- ※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(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성명	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	서명
	□동의 □미동의	

2.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·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·도, 시·군·구, 해양수산부, 귀어귀촌센터,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(시업관련 실태·설문조사 기관 포함)
- 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·제공 목적 : 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,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, 사업실태·설문 조사, 각종 안내문 발송 등
- □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: (본인) 성명, 주소지, 연락처(휴대폰번호 등), 경영체등록 DB, 재해보험 가입여부, 교육이수시간
- 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, 이용기간: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
- ※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(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성명	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	서명
	□동의 □미동의	

3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□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, 부 정수급,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에 관한 업무,
- □ 수집·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: (본인)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일 경우)
- □ 고유식별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 : (본인)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
 - *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,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
- ※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(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성명	고유식별정보의 처리	서명
	□동의 □미동의	
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

1. 현 황

성 명	주민등록번호	
주 소	전 화 번 호	
주 어업(양식업)경영 또는		
어촌비즈니스 분야(품목)		

* 주업분야(어선어업, 양식업, 수산물가공업, 소금생산업, 어촌관광, 해양수산레저), 품목(어류, 패류, 해조류, 펜션, 민박, 어촌레스토랑, 스킨스쿠버, 요트, 카누, 카약, 윈드서핑 등)으로 구분 기재

2. 경영기반 * 경영기반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

① 경영규모(ha, m², Ton, 척, 식 등)

	계	양식장	어 선	가공공장	염 전	어촌비즈니스 (어촌관광)	어촌비즈니스 (해양수산레저)	기타
소 유								
임 차								
계								

② 시설현황(동/m²)

	창 고	가두리	수 조						기타
소 유	/	/	/	/	/	/	/	/	/
임 차	/	/	/	/	/	/	/	/	/
계	/	/	/	/	/	/	/	/	/

③ 수산장비(대/연식)

어선	관리선	크레인	사료제조기	사료급이기	양망기	선별기	차 량	컴퓨터
GPS								기타

④ 생산 및 가공현황(Ton)

계	어류	패류	해조류	갑각류	기타		

⑤ 생산금액(천원)

계	어류	패류	해조류	갑각류	기타		

⑥ 기타 특기사항

- * ①~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
- 현재 어업·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는 경우 기존 어업·양식업방식 또는 어촌비즈 니스와 차별화될 수 있는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 방식을 상세하게 기술
- 향후 어업·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
- * ①~⑤사항 이외에 사업신청자의 어업·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

3. 사업계획

① 사업비 투자계획

лі н	7 74		기어라			사 업 1	비(백만원))
세 부 사 업 명	규격 (단위)	단가	사업량 (m², 대)	합계		대출금		사담
71 н о	(271)		(111, 91)	[법계	계	국고	대출	사람
계								
시설부지 구입								
양식장 등 구입								
양식장 등 신축								
양식장 등 개보수								
수산장비구입								
어선구입								
종자구입								
주택구입								
민박								
스킨스쿠버								
카약								

-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(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)
 - 3-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
- * 예시) 시설부지 구입의 경우 : ㅇㅇ군 ㅇㅇ읍·면의 ㅇㅇ번지의 ㅇㅇㅇ 소유의 대지 ㅇㅇㅇ m²을 ㅇ월 ㅇ일자로 ㅇㅇㅇ와 매매계약(부동산매매계약서, 등기부등본 별첨)을 체결하고, 잔금은 귀어업인 수산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ㅇ년ㅇ월ㅇ일까지 매도자 ㅇㅇㅇ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 후 양어장으로 용도변경 하여 ㅇㅇㅇㅇ년ㅇㅇ월까지 ㅇㅇ양식장을 신축할 예정임
- * 토지구입, 양식장 신축, 주택구입 등은 해당하는 경우에 구체적 증빙서류 별첨(부동산거래계 약신고필증, 부동산매매계약서, 임대차계약서, 시설공사계약서, 등기부등본 등)
- * 수산장비 구입의 경우 기종명, 제조회사, 규격, 연식기재

③ 자금조달 계획

(단위 : 천원)

조	달	그다바시 O 사계원 게 지사					
항 목	금 액	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					
합 계							
자체자금신규출자외부차입기 타							

④ 향후 사업(신청사업 분야)계획

(단위 : 평, 마리, 만원)

		현	재		사업비 투자(준공)후				
품목	사업규모	사업품목	연 간 판매수입	경영비	사업규모	사업품목	연 간 판매수입	경영비	
어선어업									
양식업									
종자생산									
수산가공									
어촌비즈니스 (어촌관광)									
어촌비즈니스 (해양수산레저)									

※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

- ⑤ 단기 및 중·장기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계획
 - o 계획은 단기·중기·장기로 구분하여 비전, 목표, 전략을 수립하고,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
 -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

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.

작성일: 년 월 일

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

확인자 : 소속 직위(급)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신용조사서

1.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

(년 월 일기준)

				\				
주소				전화번호				
생산자단체 등, 회사, 기타명칭		주민(사 등록번호 생년월	또는			대표자 (성명)		
신청사업명								
소요사업비 (천원)	총액	보조		대출		자	담	

2. 종합거래 신용상태

:	과거 1년	간 연체사실	부도 대위변	또는 제사실	신용상태		
유	무	연체금액 (조사기준일현재)	유	무	양호	보통	불량
	(A.471 & 2 U/11)						

3. 대출가능 추정액(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)

대출구분	담보종류	수량	대출가능액 (천원)	담보물 소재지	소유자(관계)
신용					
신용보증 선취담보					
후취담보					

※ 대출가능 추정액(담보여력)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"대출신청자료"에 따라 평가함(자료 미제출시 작성불가)

4.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(조사기준일 기준):

천원

※ 신용조사서 유의사항

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심사결과가 아니므로,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

년 월 일

○○수산업협동조합장 (인) 또는 ○○지역 금융본부장(수협은행장) (인)

<u>주택구입 확인서</u>

□ 주택 현황						
ㅇ 소재지 :						
ㅇ 소유자						
- 성 명 : - 주 소 : (연락처 :)						
o 면 적 : 연면적 m², 주택전용면적 m²						
o 신축연도 :						
ㅇ 구 조:						
□ 확인내용						
상기 소재 주택은 사업신청인 ㅇㅇㅇ이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에 ㅇㅇㅇ천원에 구입(또는 계약)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					
* 별첨 : 사진자료, 평면도 등						
년 월 일						
ㅇㅇ시·군 ㅇㅇ읍면장(인)						

(별지 제5호 서식)

사업(□계획□장소) 변경 신청서

1. 주 소:

2. 성 명:

3. 주민등록번호:

4. 변경내용 등

구 분	당 초	변경	
사 업 명			
시업내용 및 규모			
사 업 장 소			
변경 사유			
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	본인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☑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 ☑ 사업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 등)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 ☑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		

위와 같이 사업계획(장소)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자 (서명 또는 인)

ㅇㅇ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사업추진(□실적 □계획)확인서

1. 주 소:

2. 성 명:

3. 주민등록번호:

4. 신 청 금 액:

5. 사업추진실적(계획)

(단위: 천원)

사업별	사업규모		소요사업비	사업계획(완료)일	
사람 필	小月川工	계	창업자금	기타자금	사업계획(전표) 현
예)어선어업	1톤	15,000	15,000		'○○. 6.1~7.3일
예)양식업	ha(m²)	15,000	15,000		'○○. 6.1~6.15일
예)가공·유통	m²	30,000	30,000		'○○. 6.1~6.3일
예)주택 구입	150 m²	20,000	20,000		'○○. 6.1~6.8일

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(하고자)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니,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대출취급기관:

(수협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)

※ 대출취급기관 : 수협은행 ○○시·군지부(지점), ○○수협 ○○지점

년 월

신청자: (서명 또는 인)

확인자 : 시장·군수·구청장 (직인)

대출취급기관장 귀하

<구비서류>

* 세금계산서, 등기부등본,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

※ 수협에서는 대출 실행결과를 ㅇㅇ시·군·구 ㅇㅇ과 담당에게 유선통보 바랍니다.

사업자 선정 취소 신고서

1.	주	소	:

2. 성 명:

3. 주민등록번호:

4. 취소사유 등

사업 내용 (당초 사업계획)	
취소 사유	
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	본인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취소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☑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 ☑ 사업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 등)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 ☑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

위와 같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자진 취소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신 고 자 (서명 또는 인)

○○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(별지 제8호 서식)
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장 처분신고서

1. 주 소:

2. 성 명:

3. 주민등록번호 :

4. 대출금액 :

5. 사업추진실적(계획)

(단위: 천원)

र्ग स्म	기어그ㅁ		소요사업비	지어계하/이근(이	
사업별	사업규모	계	창업자금 기타자금		사업계획(완료)일
예)어선어업	1톤	15,000	15,000		'○○. 6.1~7.3일
예)양식업	ha(m²)	15,000	15,000		'○○. 6.1~6.15일
예)가공·유통	m²	30,000	30,000		'○○. 6.1~6.3일
예)주택 구입	150 m²	20,000	20,000		'○○. 6.1~6.8일

6. 매매처분사유:
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사업장(전체, 일부)을 상기 사유로 처분하고자 이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자: (서명 또는 인)

○○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경영 승계 신청서

사업대상자	성 명		주민등록	번호				
사 됩세 3 사	주 소							
승 계 인	성 명	주	민등록번호			관계		
	주 소					연락처		
	어업(양 식업)경 영경력	년	학력		년 졸업·	월 중퇴	학교(과)
승계 내용		사업명	어업경영	어업경영규모		소재지		
사 유								
기 타 참고사항								
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	과 관련 ² 것에 동 ⁹ V 사업 ³ V 사업 ³ 니다.	귀어 창업 및 하여 사업대상기 기합니다. 가 관련된 개인기 가 관련된 고유	사 선정기관 정보의 수집 식별번호(축	이 본 (· 이용 ⁽ 주민등 ⁽	인의 아리 에 동의협 록번호 등	내의 개인 합니다. 등)의 수집	정보를 처	리하는

위와 같이 어업경영(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) 승계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자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어업허가 거래금액 조사서

ā	그 분	어선중개업소 1	어선중개업소 2
٨]군구		
,	상 호		
Ľ	H표자		
지역별 등록번호			
	업종		
조사사	톤급		
항	거래금액		
	비고		
평균	거래금액	※ 2개소 산술 평균 금액	

상기와 같이 어선거래시스템(www.어선거래.kr)에 등록된 어선중개업 소를 통하여 조사하였음을 확인함.

년 월 일

조사자 시·군·구 과 담당자 (서명 또는 인)
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자 관리카드

인적사항					관리	헌호		
	구분	귀어업역	인(), 재	촌비어업인()			- 연락처 :	
	성명 : (한자	:)	주민등록번호 : -				
사 진	귀어 전	주소		귀어 후			주 사업명 :	
(반명함판)				* 재촌비어업인은 현	현주소만	기입		
	(귀어 전 직업:)					어업경영체 등록일 :		
	우편번호 :		우편번호 :					
	⑧최종학	력 :	학교	과(졸업)	10)세대주	주명(본인과의 관계):	

귀어 자금(대출) 지원상황										
세부사업명	금액(천원)	지급일	지원조건	상환예정일	비고					
창업자금										
주택구입										
어촌비즈니스										

가족사항(본인제외)									
성 명	관 계	생 년 월 일	직 업						

주요?	병력						
구	분	기	Ž	난(년월	일)	주요경력	및 직책
병	역	•	•	•	•		
			•		•		
			•	•	•		
	·		•	•			

어앝	어업경영교육 등 훈련										
기간(기간(년월일) 및 시간 내 역 실시기관명										
		시간									

경영	경영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							
	구 분	년	년	년	년	년	년	년
	사업(광어, 우럭, 굴, 김, 미역 등) ⁺ 모(마리, 톤 등)							
영반 (인유계상)	 사업장(어선, 양식, 종자, 가 공·유통 등)종류별 규모(톤, ha,m²) 시설(수하식, 뗏목식, 저온냉장고 등)종류별 규모(대) 장비(수산장비,컴퓨터,승용차 등) 종류별 규모(대) 건축물(민박,등)(m²) 							
경 영 실 적 (천원)	어 업 조 수 익 어 업 외 소 득 경 영 비(생산비) 어가소득 (순수익)							
	지원자금 상환잔액(천원)							
	경 영 기 술 수 준							
ا م ارح	어촌생활 만족도							
귀어	애로건의사항							
	담당자 종합의견							
	조 사 자 직 · 성 명							

-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사업시행자가 현지 확인 후 작성하되 구분 란에는 귀어업인 1년차, 2년차, ····등을 구분기입
-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,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, 중, 하, 문 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
- ③ 어촌생활 만족도는 인터뷰를 통해 만족, 불만족으로 구분하고 불만족 사유 기재
- ④ 담당자 종합의견은 귀어 가구의 정착실태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
- ⑤ 애로사항은 귀어 정착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낀 내용 기재
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 (0000년 0/4분기, ㅇㅇ시·도 ㅇㅇ시·군·구)

1. 총 괄

(단위 : 명, 백만원)

Ŧ	구분		사망	신변 이상	전업	이주	무단 이탈	기반 상실	기타
총 사업	인원								
취소 자	금액								
회수 완료	인원								
완료	금액								
	인원								
회수 중	회수액								
	미회수액								

2. 사업취소자 명단

(단위:백만원)

지원 연도	시도	시군구	성명	지원분야	지원금액	취소사유	회수금액	미희수액	화수 완료 여부
				어선어업 양식업 종자생산업 내수면어업 가공·유통업 어촌비즈니스(어촌관광) 어촌비즈니스(해양수산에저) 주택 기타		사망 신변이상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반상실 기타			회수 완료 회수 중

- * 기타 지원분야:
- ** 기타 취소사유:
- ※ 본 명단에 없는 자는 실태조사 결과 정상추진 중임을 확인함

확인자: ㅇㅇ시·군·구 ㅇㅇ과장 성명 (서명 또는 인)

(별지 제13호 서식)
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취소 확인서

4	> 1	~J	
	성	명	:
т.	0	0	•

- 2. 주 소:
- 3. 주민등록번호 :
- 4. 사업 내용:

(단위:백만원)

		(- / - -
세부사업명	사업비(지원액)	회수 결정액
계		
어장구입		
주택구입		
•		

5. 사업취소 사유

※ 사망, 신변, 재촌 전업, 이주, 무단이탈, 기반상실 등을 상세히 기재

년 월 일

확인자 : ㅇㅇ시·군·구 ㅇㅇ과장 성명 (서명 또는 인)
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현황 보고서

1.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

(단위 : 명)

구분				연	령	별			
7 世	합 계	20-24	25-29	30-34	35-39	40-49	50-59	60-69	70이상
합계									
남									
여									

2.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

(단위 : 명)

u				고 졸		전	문 대	졸	대	대 졸 이 상		
구분	합계	국졸	중졸	소계	수산계	수산 계외	소계	수산계	수산 계외	소계	수산계	수산 계외
합계												
남												
여												

3. 사업별 인원

(단위 : 명)

시·급	군별		수산분야								
시·군	구분	합계	어선어업	양식업	종자생산	내수면	가공유통	어촌 비즈니스	소금생산	기타	주택구입
	합계										
합 계	남										
	여										
	소계										
ㅇㅇ군	남										
	여										

4. 사업별 지원 금액

(단위 : 백만원)

시·	군별		수산분야								
시·군	구분	합계	어선어업	양식업	종자생산	내수면	가공유통	어촌 비즈니스	소금생산	기타	주택구입
	합계										
합 계	남										
	여										
	소계										
ㅇㅇ군	남										
	여										

<u>대출(□창업자금, □ 주택자금) 실적 보고서</u>

(단위 : 명, 백만원)

					(인	위 : 명, 백만원)
시도별	자금배정액	대 🤅	출 액	미대	출액	비고
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	(기	인 원	급 액	인 원	금 액	-1 -1
합 계						
경기						
제 주						
711 -1						

[※] 분기별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
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자 취업 신청(승인)서

- 1. 성 명:
- 2. 생년월일 :
- 3. 취업(예정)업체:
 - 업체명 :
 - 주 소:
 - 연락처
- 4. 취업 기간 및 월 근로 시간 :
- 5. 취업사유:

어한기	겸업(생계유지)	기타(사유 작성)

* 해당부분에 '○' 표시

위 사람은 년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영어에 종사 중(예정)이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취업하게 됨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

000에 대한 승인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이 일시적 취업을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ㅇㅇ시·군·구청장 (직인)